

보험 계약의 효과

조 철 우
(인천지부장)

1. 보험자의 의무 가, 손해 보상 의무 1)의의

손해보험 계약의 효과로서 보험자는 보험 기간중에 보험의 목적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은 보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 이익에 생긴 손해를 의미하며, 보험자는 최초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보험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구상법에서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 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보험자는 ①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특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②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의 보험 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후 지체없이 그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658조)'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급한 보험금액은 손해액

의 사정에 의한 보상금액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다.

보험금의 지급 의무의 소멸 시효는 2년이며, 소멸 시효를 단축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663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상법에 규정이 없지만 보험 계약의 성질상 보험 사고 발생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권자가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하였든가 청구 절차의 해태 등은 시효기간의 진행에 영향이 없다.

2)면책 사유

보험자는 보험 기간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보험 사고의 유발

①보험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659조). 여기서 고의는 보험 사고를 발생시킬 의사를 가진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결과를 인식하고 그것을 용인하여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를 뜻한다.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고의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며, 중과실을 입증함으로써 고의에 준한 취급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면책 규정은 보험 계약의 시행계약적 성질에 비추어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며, 또 공익적인 면에서도 폐단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②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등의 배우자, 가족, 동거중인 사용자, 기타 동거인 등의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화재 보험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약관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측의 고의에 의한 사고 유발에 대한 보상 책임의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로서 무효이고,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상 약정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나)전쟁 기타의 변란

보험 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660조).

전쟁, 기타의 변란은 보통 평상시에는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일단 발생할 때에는 막대한 손해가 생기며 통상 보험료로는 보험 단체에 극심한 불이익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즉 통상의 보험 요율은 보통 그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도를 기초로 하여 대량적 통계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보험료를 징수하면서 동시에 현저하게 다수·다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쟁은 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국가간의 교전 상태를 가리키며, 기타 변란은 이에 준하는 국가간의 분쟁 상태 또는 내란 등을 가리킨다.

이에 따른 면책 사유는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에 의하여 할증 보험료를 받고 보상 책임을 진다.

(다)기타 면책 사항

보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험자는 책임이 없다. 또한 보험 약관에서 면책 조항이 보험 제도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며 또, 상법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한 유효하다. 따라서 보험자는 이 조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라)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①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 ②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③보험 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고도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하지 않은 때, ④보험 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미 지급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655조 본문).

그러나 ②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③·④의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655조 단서).

나, 보험증권 교부 의무 1)의의

보험증권은 보험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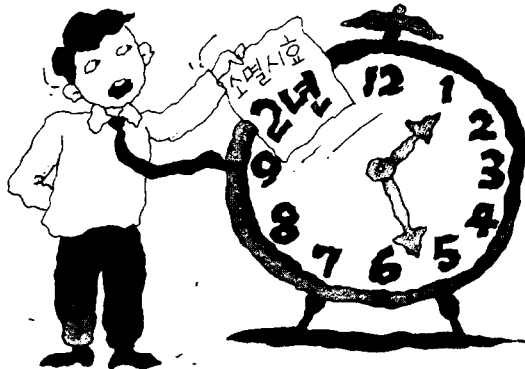
교부하는 증권으로 공통된 기재 사항은 보험의 목적, 보험 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보험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 계약의 년월일 및 보험증권의 작성자와 작성년월일로 되어 있다.

보험증권은 요식증권이지만 그 요식성은 어음처럼 엄격한 것은 아니고, 그 일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증권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위의 기재 사항 이외에 보험자의 면책 사항 기타의 보험 약관이 이면에 기재된다.

2)보험증권의 발행 교부

보험증권은 보험자가 보험 계약이 성립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작성하여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640조1항 본문).

구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였으나 개정된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없어도 보험 계약 성립후의 보험자의 법률상의 의무로서 교부하는 것이다.



개정 상법 640조 1항 단서에 의하면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640조 1항 본문에서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과 상충되나 조문의 표현은 전자의 뜻으로 해석하며, 보험자가 증권을 교부하는 것을 법이 금지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동안에도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며, 이렇게 교부된 보험증권도 효력이 있는 것이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없을 따름이다.

또한 개정 상법은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새로운 보험증권을 작성할 필요가 없이 기존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640조 2항)고 하여 보험 거래 실무와 일치시켰다.

3)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가) 증거 증권성 및 면책 증권성
보험계약은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며, 보험증권의 작성·교부는 계약 성립을 위한 전제 요건이 아니고 또, 계약 성립을 위한 방식도 아니다. 즉 보험증권의 작성·교부의무는 계약 성립의 효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불과한 것이며, 보험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은 있으나 보험계약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은 없으므로 계약서도 아니다.

또한 그 기재 내용은 보험자가 작성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의없이 수령한 때에는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에 관하여 사실상의 추정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증거 증권에 속하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제시자의 자격 유무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가 없으므로 면책 증권이다.

(나) 유가증권성

① 유가증권에 관한 학설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입장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있다. 이에 관한 학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긍정설

금전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를 지시 채권 또는 무기명 채권으로 할 수 있는데, 보험금 청구권에 한하여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으므로 보험증권의 유가 증권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설이다. 그러나 이설은 보험증권이 금전 채권 증권이므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인 때에는 모두 민법 제 508조 규정에 비추어 유가증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험증권의 특성이 있는가의 여부와 목적물의 이전에 의하여 위험의 변동의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 부정설

보험증권은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면책증권에 불과하고 유가증권은 아니라는 설이다. 이 설은 보험증권이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보험관계의 이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것은 지시식 증권이 무의미한 것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시증권은 원래 배서에 의하여 증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이 증권의 지시성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

㉢ 절충설 (일부 긍정설)

운송보험 증권, 적하보험 증권 등의 운송증권 또는 창고증권 등의 유통증권과 함께 유통되는 보험증권이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인 때에만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유가증권성의 통설이다.

② 상법 제679조 2항과의 관계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679조), 이 통지가 없으면 보험증권의 이전만으로는 보험관계의 이전이 안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 통지 의무는 개정 상법의 신설된 의무이며, 그 개정 전의 해석상의 대항 요건의 요부에 관한 학설의 대립을 입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통지 의무는 단순한 보험계약법상의 의무에 불과하고, 보험관계의 이전의 대항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이 통지가 없어도 보험증권의 이전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험관계의 이전은 인정되는 것이다.

다. 보험료 반환 의무

보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여기서 미경과 보험료라 함은 수령한 보험료중 해지시까지 보험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 기간 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자의 보험료 반환 의무는 2년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가. 보험료 지급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 계약이 유상 계약이라는 본질상의 필요에 따라서 손해보상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보험료의 지급 의무자는 자기를 위한 보험의 경우이든,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이든 보험계약자가 된다.(639조3항 본문)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639조3항 단서) 그러나 이 경우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는 때에는 보험료 지급 의무가 없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 의무가 보험계약자로 부터 그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및 그 타인의 양자의 어느 쪽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지는 것을 약정한 경우 이는 보험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나.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료는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정하여지고, 약정된 보험료는 당사자의 합의없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위험의 감소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를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에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위험의 소멸에는 위험이 객관적으로 소멸한 경우뿐아니라, 당해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보험기술상 그 위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경우까지 포함한다.

2) 초과보험의 경우

계약 당시의 초과보험의 경우, 즉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액이 보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이 경우의 보험 목적의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의 초과보험의 경우, 즉 보험가액이 보험

기간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자에 의한 보험료의 증액 청구

보험자는 일정한 경우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보험 기간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보험 거래 실무와 일치시킨 제정 상법에 신설된 조항이다. 이경우의 보험료 증액청구권도 형성권이며, 증액의 효력이 장래에 대하여서만 생긴다.

4) 보험료의 지급 장소와 시기

보험료의 지급 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무 변제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지참채무가 되어 채권자인 보험자의 영업소가 지급장소가 된다. 그러나 실체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직원이 보험계약자를 방문하여 수금하는 일이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수금의 관행을 인정하고 보험료 지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추심채무로 하는 뜻의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의 거래 은행

을 통하여 납입하거나, 지로 방법에 의하여 납입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최초의 보험료는 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계약의 해제가 의제된다. 2회 이후의 보험료(계속보험료)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5)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 시효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은 1년간의 불행사로서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다. 통지의무

1)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기간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험의 변경은 증가와 감소의 양자를 뜻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위험이 증가한 경우만을 가르킨다. 왜냐하면 위험의 감소는 보험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지를 요하는 것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이며, 이것은 만일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러한 증가한 위험이 있었으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약정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를 가리킨다.

보험계약자측이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부터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 사고 발생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657조1항)

이러한 입법 취지는 보험계약자 등에 보험 사고 발생 통지의무를 지우는 것은 이 통지에 의하여 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상황을 명확히 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의 유무 및 그 범위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보통 보험 사고의 발생은 보험계약자 등이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에게 통지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

가) 통지의 의의 및 법적 성질

보험 사고 발생 통지의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①보험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 조건인 동시에 고지위무와는 달리 보험자에 대한 진정한 의무라고 하는 설(전제조건·진정 의무설), ②법률상의 진정한 의무라고 하는 설(진정 의무설), ③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설(전제 조건설) 등이 있다.

보험계약자의 통지없이도 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사실을 안 때에는 통지를 요하지 않고,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의무를

그 전제 조건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또 이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제657조2항에도 불통지의 경우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위의 ②설이 옳다고 본다.

나) 통지 의무자

통지 의무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이나 어느 한쪽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면 되고 다수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그중 한사람이 하면 된다.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두 또는 전화로도 무방하다.

(다)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손해가 증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657조2항).

이 규정은 통지 의무자가 보험 사고의 발생을 알면서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개정상법의 신규 조항이다. 따라서 통지 의무자가 사고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보험자의 이 책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의 통지의무 위반과 손해의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및 증가 손해액에 관하여는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통지 의무자가 사고 발생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등의 통지 의무자가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보험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자는 사고 발생을 알고도 통지를 아니한 의무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㉞